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된 바 있어, 현행 지침상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 일관성을 갖추하고자 함.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규정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의무는 삭제하여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도모함(안 제2조제13호 등)

나.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출·관리되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에 대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법 제28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91조”를 “법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으로,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0호 중 “법 제28조”를 “법 제28조, 제28조의2”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호 중 “제31조제1항·제2항”을 “제28조의2, 제31조제1항”으로, “유지관리업자의”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의”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를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관리”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정보관리”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법 제28조제6항”을 “법 제28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면 규칙 제25조의2 및 규칙 별지 제13호의2의 서식에 따라 그 등록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기술인력·보유장비 및 자본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에 대해 FMS에 작성된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경우 그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현황 보고)”를“(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현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업지시서

5. 보고서 부록(부록 파일유형에 따라 PDF파일 외 파일형식 제출 가능)

제23조 본문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FMS”를 “교육 이수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유지관리업자명”을 “안전점검전문기관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규모 및 구조형식”을 “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지관리주체(공공,민간), 도로명 상세주소”를 “관리주체(공공, 민간), 유지관리보고주체(관리주체, 취합기관)”로 한다.

1.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

제29조제2호 중 “시설물구분(건축물,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터널”을 “시설물종류(교량, 터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민간)”을 “(공공, 민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규모 및 구조형식”을 “제원”으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9조의8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한다.

제34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7호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행정처분 현황”을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로, 같은 서식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를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별 현황

구분	계	등록분야														
		교량 및 터널 ①	건축 ②	항만 ③	수리 ④	종합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③	① ④	② ③	② ④	③ ④	① ② ③	①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전년도																
보고분기 내역																
당해년도 누계																
증 감																

[자료 추출일 : . . .]

□ 시도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시도	계	등록분야														
		교량 및 터널 ①	건축 ②	항만 ③	수리 ④	종합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③	① ④	② ③	② ④	③ ④	① ② ③	①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료 추출일 : . . .]

□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분야별 현황

구분	계	등록분야														
		교량 및 터널 ①	건축 ②	항만 ③	수리 ④	종합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③	① ④	② ③	② ④	③ ④	① ② ③	①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전년도																
보고분기 내역																
당해년도 누계																
증 감																

[자료 추출일 : . . .]

□ 시도별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현황

시도	계	등록분야														
		교량 및 터널 ①	건축 ②	항만 ③	수리 ④	종합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③	① ④	② ③	② ④	③ ④	① ② ③	①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료 추출일 : . . .]

□ 시도별 행정처분 현황

시도별	계	시정명령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진단 기관	점검 기관	진단 기관	점검 기관	진단 기관	점검 기관	진단 기관	점검 기관	진단 기관	점검 기관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료 추출일 : . .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구분					
사용빈도		제 출 처			

행	연번	처분일자	처분구분	분야	처분내용	처분사유
정 처 분 현 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안전관리원장

직인

유의사항

※ 위 현황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사실 확인서

	시설물명	공사명	시설물 번호	시설물 종류	종별	주소	제출자	접수 완료일
시설물 관리 대장								

	공사명	제출목록	대상시설물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	[]대상	제출자 접수완료일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 시방서	
	[]비대상	비대상 사유 [] 구조계산서 [] 기타	

주) 공사명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확인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안전관리원장

직인

유의사항

※ 본 제출 사실 확인서는 관리주체 또는 시공자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를 통해 제출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 사실만을 확인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관리 현황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접수 현황

기준일	구 분	전 체	제 출	미제출
전체 누계	합 계			
	공 공			
	민 간			
해당분기 현황 (20년 ○/4분기)	계			
	공 공			
	민 간			
보고년도 누계	계			
	공 공			
	민 간			

[자료 추출일 :]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사전예고 및 제출촉구 현황

분 기		사전예고		제출촉구	
		시공사수	시설물수	시공사수	시설물수
○/4 분기	△월				
	△월				
	△월				
계					
보고년도 누계					

[자료 추출일 :]

<붙임> 보고년도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안전점검종합보고서“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하 “안전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u></p> <p>5. ~ 12. (생략)</p> <p>13. <u>“관리기관”이란 법 제28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91조에 따라 각각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u></p> <p>14. ~ 16.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5. ~ 12. (현행과 같음)</p> <p>13. ----- <u>법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u>----- ----- <u>안전점검전문기관</u>----- ----- <u>시·도지사를</u> ----- -----.</p> <p>14. ~ 16. (현행과 같음)</p>

17. “대행기관”이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를 말한다.

18. (생략)

제5조(시설물정보의 종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로 관리하는 시설물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10. 법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31조제2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2. ~ 18. (생략)

제6조(시설물정보의 입력·보고

17. -----

----- 안전점검전문기관을 -----
-----.

18.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물정보의 종류) -----

-----.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28조, 제28조의2-----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삭제>

12. ~ 18.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물정보의 입력·보고

· 제출) 제5조에 따른 시설물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생략)

2. 법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현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및 관리기관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신고·제출하여야 한다.

3. ~ 7. (생략)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라 입력·제출하여야 한다.

9. ~ 11. (생략)

제3절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관리

제1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 ① ~ ③ (생략)

④ 관리기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경우 그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

· 제출) -----

-----.

1. (현행과 같음)

2. -----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
-----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
-----.

3. ~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11. (현행과 같음)

제3절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정보관리

제1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28조제7항-----

다.

<신 설>

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기관은 법 제31

--.

제12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면 규칙 제25조의2 및 규칙 별지 제13호의2의 서식에 따라 그 등록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기술인력·보유장비 및 자본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에 대해 FMS에 작성된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경우 그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 및 영 제25조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과 처분사
유를 처분일로부터 2일 이내 F
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
경·행정처분) ① 관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
0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종합
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을 활용
하여 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
경·행정처분 현황을 관리하여
야 한다.

②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결
과를 최초로 제출할 경우에는
그 등록 현황을 FMS에 입력하
여야 한다.

제15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
관리업자 현황 보고) 운영기관
의 장은 FMS에 입력된 안전진
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
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

<삭 제>

제15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
점검전문기관 현황 보고) -----

----- 안전점검전문기관

-----.

<p>제1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제출) ① 관리주체 등이 법 제13조제7항, 제17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② ~ ⑥ (생략)</p> <p>제23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u>유지관리업자</u>는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p>	<p>제1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제출)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과업지시서</p> <p>5. <u>보고서 부록(부록 파일유형에 따라 PDF파일 외 파일형식 제출 가능)</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23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p> <p>-- <u>안전점검전문기관은</u> -----</p> <p>-----</p>
---	--

의 대행실적을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실적확인서 발급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가 FMS에 입력된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6조(기술자의 교육 이수) ① 교육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 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FMS에 입

제24조(실적확인서 발급 등) ① -----
----- 안
전점검전문기관이 -----

② -----
----- 안전점검전문기관이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기술자의 교육 이수) ① -----

----- 교육 이수

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이수 결과 입력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입력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27조(정보시스템 데이터 개방)

① (생략)

②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명

2. ~ 8. (생략)

③ (생략)

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설명, 시설물구분(건축물, 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 터널 등)

2.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3. (생략)

4. 소유주체(공공, 민간), 유지관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

1. ~ 7. (현행과 같음)

제27조(정보시스템 데이터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안전점검전문기관명

2.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① -

1.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

2. ----- 제원

3. (현행과 같음)

4. ----- 관리주

리주체(공공,민간), 도로명 상세주소

5. ~ 8. (생략)

② (생략)

제29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요청)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FM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생략)

2. 시설명, 시설물구분(건축물, 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

3. 소유자(공공, 민간), 관리주체(공공,민간)

4.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5. · 6. (생략)

제33조(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의 제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체(공공, 민간), 유지관리보고주체(관리주체, 취합기관)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요청)

1. (현행과 같음)

2. -----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

3. -----
--(공공, 민간)

4. ----- 제원

5. · 6. (현행과 같음)

제33조(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의 제출) -----

법 제9조의8항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준공 · 사용승인 사실 통보서를 FMS에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 ⑦ (생략)

⑧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에서 같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제38조(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방법) ①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34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8항

제34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⑨·⑩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외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필요 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콤팩트 디스크로 제작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출도서의 접수 및 확인)

①·② (생략)

③ 운영기관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사전예고 및 제출 촉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을 확인한 후 제출의무자가 제39조에 따라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매달 초에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제출의무자가 준공·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안전

제39조(제출도서의 접수 및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제출기한의 다음 달
초에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42조(제출도서의 활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열람요
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
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해당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

3. ~ 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
게 사본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
며,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
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제42조(제출도서의 활용)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안전점검전문기관이 -----

3. ~ 6.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안전점검전문기관이 -----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해당 관리주체의 허락을 얻어 요청한 경우

3. ~ 5. (생략)

③·④ (생략)

제43조(제출도서의 관리현황 보고) ① (생략)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관련 정보의 열람)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에 한한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제출도서의 관리현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45조의2(관련 정보의 열람) ①

1. ~ 6. (현행과 같음)

<p>7.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u>유지관리업자</u>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항실적에 관한 정보</p> <p>② (생략)</p>	<p>7. ----- <u>안전점검전문기관</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	---